

## -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

### 협력사 선정/운용 규정

#### 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의 협력업체 (이하 “협력사”)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제2조 [협력사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]

- ①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 포함)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,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
- ② 협력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 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개별 통지한다.
- ③ 협력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.

#### 제3조 [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]

당사는 협력사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.

#### 제4조 [선정기준 및 절차]

- ① 당사의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-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
  -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
  -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
  -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
  - 당사와 협력사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 있는 가격 여부
- ② 협력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로 한다.
- ③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.

#### 제5조 [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]

협력사로 선정·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.

#### 제6조 [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]

당사는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,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

#### 제7조 [협력사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]

당사는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.

#### 제8조 [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]

- ①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거래취소(중단)를 할 수 있다.
  1.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  2.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
3.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4.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

②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.

#### 제9조 [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제재]

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